CGS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www.cgs.or.kr)	報 道 資 料 (Press Release)	KSD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보 도 일 자	2014. 11. 6. (목) 10:00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한국예탁결제원 공동주최

2014 CGS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11월 6일(목)** 63컨벤션센터 세쿼이아&파인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함

- 2015년 1월 1일부터 예탁결제원의 **중립투표제도**(Shadow voting)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정족수 충족을 위해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기회이자 권리이며, **기업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관행 상**, 대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주주들의 의견이 경시**되고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실정임
- 이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주주총회 **형해화의 원인**과 **해외 주주총회 모범 관행 및 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14년 11월 6일(목) 9:00-16:00
- 장소 : 63컨벤션센터 2층 세쿼이아&파인홀
- 주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예탁결제원
- 후원 : 한국거래소

□ 주제발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관투자자, 학계, 정부, 감독당국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주주총회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였음

○ **제 1세션**에서는 英헤르메스자산운용 전무이사인 **한스-크리스토프 허트** 박사(Dr. Hans-Christoph Hirt)가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발표함

○ **제 2세션**에서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함

○ **제 3세션**에서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부회장이자, 아시아 리서치 헤드인 **준 프랭크(Jun Frank)**가 **'정보에 입각한 주주들의 투표 행사를 위한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함

○ **제 4주제 세션**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연구위원이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 개최 및 감사 일정, 정보 공시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함

※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은 '붙임 2. 2014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약' 참조

○ 종합 토론에서는 법무부·금융위 실무진 등 6인의 패널이 주주총회 실효성 제고 방안과 주주총회 관련 국내 법·제도적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였음

[붙임] 1. 2014 CGS 국제심포지엄 개요.
2. 2014 CGS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약. 끝.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부문 안상아 연구원 (3775-3707, sanga@cgs.or.kr)
<한국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 함영대 전자투표팀장 (3775-3506, euchre@ksd.or.kr)

[붙임 1]

- 2014 CGS 국제 심포지엄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6일(목) 9:00-16:00, 63컨벤션센터 세쿼이아&파인홀

○ 주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예탁결제원

○ 후원 : 한국거래소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9:00 - 9:05 (5분)	개 회 사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9:05 - 9:10 (5분)	환 영 사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9:10 - 9:20 (10분)	축 사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9:20 - 9:30 (10분)	기조연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 제 발 표		
9:30 - 10:10 (40분)	**제 1주제**	Dr Hans-Christoph Hirt Executive Director, Hermes Fund Managers Ltd.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중요성 : 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The importance of proxy voting and stewardship activities** **: An institutional investor's perspective**	
10:10 - 10:20 (10분)	Q&A	
10:20 - 11:00 (40분)	**제 2주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중심으로 **Legal Measures to Promote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 Mainly Focusing on the Electronic Voting &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11:00 - 11:10 (10분)	Q&A	
11:10 - 11:30 (20분)	Coffee Break	
11:30 - 12:10 (40분)	**제 3주제**	Jun Frank Vice President, Head of Asia ex-Japan Research, ISS
	정보에 입각한 주주들의 투표 행사를 위한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 **Roles of proxy advisors in helping investors make an informed vote**	
12:10 - 12:20 (10분)	Q&A	
12:20 - 13:30 (70분)	오찬	
13:30 - 14:10 (40분)	**제 4주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연구위원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 개최 및 감사 일정, 정보 공시 개선을 중심으로 **Policy reform for informed voting at Annual General Meeting in Korea** **- Focusing on filing period of annual report and timetable of AGM**	
14:10 - 14:20 (10분)	Q&A	
14:20 - 14:40 (20분)	Coffee Break	
14:40 - 15:40 (60분)	<패널토론(6人)> 사회자 :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이준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강신우 한화자산운용 대표,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KDI공공투자관리센터 변호사	
15:40 - 16:00 (20분)	Q & A	

[붙임 2]

- 2014 국제 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약-

(제 1주제) The importance of proxy voting and stewardship activities: An institutional investor's perspective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중요성: 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Dr. Hans-Christoph Hirt, LL.M. I Hermes Fund Managers Ltd.

한스-크리스토프 허트(Hans-Christoph Hirt) 박사는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Stewardship Activities)의 중요성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투자자와 기업지배구조 간 관계를 법·규제 및 자율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이사회, 직원, 투자자 등의 여러 경제참여자들이 작동하는 순환구조로 바라보고, 이 과정에서의 주주 및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불행사, 단기주의 투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로 인해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고 종국에는 엄청난 대리인 비용을 소모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주식 매수·매도에만 치중하지 않는 적극적인 주주 행동주의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지고 경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여러 실증적 연구 결과들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최근 불거진 이슈로서 기관투자자와 펀드매니저 사이의 잠재적 갈등요소를 지적하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 이해관계 및 주된 관심영역이 상이하게 얽혀있다는 점, 펀드매니저가 근시안적으로 주식 매수·매도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펀드매니저들의 과도한 투자 리스크 감수와 근시안적 투자성향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키우는 데 일조하였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렇듯 상이한 이해관계 간의 충돌을 사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주주 행동주주의 필요성과 효과를 증명하는 몇몇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해외 자율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및 법적 규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책임투자 등의 원칙을 권고하는 모범적인 자율규제의 예로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PRI), UK Stewardship code,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ICGN)를 들었고, 법적 규제로는 EU Shareholder Rights Directive를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현실과 관련하여 감사보고서 공시의 시의성 부족, 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 미흡, 주총 안건의 무분별한 일괄상정, 주총 개최일의 집중 등의 문제를 언급하고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결권 행사는 주주행동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 인식의 제고, 자율규제 기관의 역할 등이 이어져야 함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제 2주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
-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권유제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

김순석 교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관행에서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또는 전자투표), 위임장 권유제도 등 여러 제도에 대한 현실적 측면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현행 법령상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예로 서면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 의결권의 대리행사제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제도를 언급하였다. 특히 서면투표제도(또는 전자투표제도)는 주주 자신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반면,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주총마다 반드시 위임장권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등 제도 간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제도에 따르면, 이사의 재량으로 모든 주주 혹은 특정한 주주를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대리인 선임 또는 결의에 있어 회사에 넓은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국내 상장회사의 입장에서는 서면투표(또는 전자투표)보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 결과, 절반가량의 회사들이 새도우보팅 폐지 이후에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내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의 활성화와 위임장 권유제도 등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특히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에 의한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표준정관에 전자투표의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유인장치를 마련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발행회사의 경우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자투표제도를 강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보통은 서면투표제도나 위임장권유제도 중 하나를 택하여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기에 우리 역시 이와 같은 해외의 사례를 참조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을 예시로 들었다. 일본의 경우 상장여부와 관련 없이 주주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서면투표제도나 위임장 권유제도를 선택하게 하고 있으며 회사가 서면투표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 권유제도를 실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위임장 권유 시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같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면투표(또는 전자투표)제도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장 권유 제도 중 하나를 기업들이 선택하여 운영한다면 주주총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3주제) Roles of proxy advisors in helping investors make an informed vote (정보에 입각한 주주들의 투표 행사를 위한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역할)

Jun Frank I Head of Asia Research, ISS

준 프랭크(Jun Frank) ISS 부회장은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의 역할과 의의를 중심으로 발표하며 의결권 행사 제약 요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첫째로 의결권 자문회사가 기관투자자들의 준법감시 책임과 의무 이행 기여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의결권 행사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선도적인 여러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관련 정책(policy)을 개발하고 그에 기반한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언급하면서, ISS의 경우 역시 의결권 정책에 기반한(policy-based)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시장으로부터의 피드백, 설문조사, 집단 회의, 개방적 논평 과정 등을 거쳐 투명한 방식으로 해당 정책들을 수립·개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결의 안건들의 목록을 주요 국가별로 정리하여 보여주면서, 지배구조 전문가로서의 기능해야 할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유형을 설명하였다. 특히 Zhuzhou CSR Times Electric 사례를 통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이슈들을 소개하였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주요 국가들 간 비교를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로 그는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가 일련의 광범위한 정보로부터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집, 종합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의결권 행사에 대한 ISS의 모든 권고와 분석은 외부 공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함을 언급하며, SK텔레콤과 Supalai Public Company를 사례로 들어 의결권 행사 권고·분석에 있어서의 외부 공시정보 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편, 그는 불가피한 명의개서 대리 기관 및 예탁 기관의 존재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인 간극과 의결권 중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결권 행사 저해 요인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시점과 의결권 행사 가능 기간을 아시아 주요국들 간 비교를 통해 보여주면서, 의결권 행사 및 그에 대한 권고와 분석에 이용 가능한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연중 정기주주총회가 주로 개최되는 시기, 정기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날과 가장 많이 개최되는 달을 G7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별로 제시·비교하였다.

그는 끝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산업 내 의결권 자문회사가 '준법감시 혹은 정기주주총회에 초점을 맞추어 연중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Back Office적 성격'으로부터, '준법감시 뿐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연중 상시적으로 일일 업무가 진행되는 Front Office의 모습'으로 진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제 4주제)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 개최 및 감사 일정, 정보 공시 개선을 중심으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이하 주총)와 관련된 법제 및 관행을 소개하고,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과 주총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개최 및 감사 일정, 정보 공시 개선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충실한 의안분석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1) 국내 상장회사의 80%이상이 12월말 결산법인이어서 정기 주총이 3월 중·하순에 집중되는 점, 2) 현행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또는 법인세 확정 신고 시에 주총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배당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점, 3) 회사의 결산과 감사를 위해 특히 중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불가피하게 소집공고가 주총 2~3주전에야 가능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례로 배당·임원보수 등의 안건 분석을 위해 해당 기업·산업의 특성, 경쟁기업의 경영성과 등이 필요한데 회사마다 소집공고 일이 동일하지 않아 해당 자료 확보와 비교·분석이 어렵게 되는 점을 들며 충분한 정보가 주주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이사회가 승인한 배당·재무제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방안만으로는 현재의 주주총회 관련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움을 들어, 추가적인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공시·송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를 통해 경쟁회사 간 성과 비교가 가능해져 배당 혹은 임원 보수 안건에 대해 투자자와 시장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둘째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서 결산·감사 일정을 확보해 재무제표 등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두 방안을 통해 주주는 소집공고와 함께 감사보고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는 주주총회 공고 등을 최소한 주주총회 4주 이전에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고와 개최 사이의 기간을 늘려 주주총회 개최의 집중 현상이 유지되더라도 의안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등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넷째, '기준일을 현재 주총 개최 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을 제안하여 이를 통해 현재 기준일 상 주주와 의결권 행사 시 주주 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원 선임 시 경력 전체와 함께 후보의 적격성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과 추천을 소집공고문에 기재하고, 주주총회결과 공시에 안건별 찬성과 반대 비율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찬반 비율 공개는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충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그는 미국 상장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한 이후에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개의 상장회사가 사업연도 말 종료 이후 4~5월경 주총을 개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비단 미국 뿐 아니라 독일, 영국, 호주 등도 마찬가지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美 모범회사법 등에서는 기준일을 주총에 앞선 7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주총일 48시간 전에 기준일을 정하도록 하는 등 일률적으로 사업연도 말을 기준일로 정하는 사례가 드물고, 미국에서는 소집통지 기간 역시 국내와 달리 주총일 10~60일 사이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개 40일 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그는 주주가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보다 근본적인 주주총회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상법, 상장회사 표준정관, 법인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